

영 등 포 구 의 회
제11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(안)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2005. 3. 3



社會建設委員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(안)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
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5. 2. 4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□ 제정(제안) 이유

-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(2004.1.29) 공포되어 하위법령인
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(2004.7.30)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
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
하려는 것임

□ 주 요 골 자

-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고,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함(안 제4조)
-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(안 제7조)
- 청소 기준, 대·소변기 소독 주기, 내·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·관리기준을 정함(안 제9조)
-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,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 내지 제12조)
-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기준을 정함(안 제14조 내지 제15조)
-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(안 제16조)
- 공중화장실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

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18조)

□ 관련 법 규

-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· 같은법 시행령 · 같은법 시행규칙

□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중에 있음.

□ 검토 의견

- 본 조례(안)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 관리하여 이용시민에 대한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리구민 생활수준 내지 문화수준을 감안해 볼 때에 본 조례 제정시기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의 시행으로 현재의 낙후된 공중화장실 여건을 보다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예상됩니다.
- 그러나 매사에 제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
그러므로 본 조례(안) 내용 중 공중화장실의 관리부분에 심도 있는

심의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회
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
관리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3. 3

보 고 자 : 이 남 식